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221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의자 : 김소희 · 최수진 · 김은혜
박덕흠 · 김상훈 · 이현승
엄태영 · 박준태 · 권영진
김위상 · 주호영 · 김선교
서천호 · 조승환 의원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범죄피해 당시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로 구조금의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범죄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구조금 상한은 중대 범죄 피해자의 장기적 생계 회복과 사회복귀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상한 조정이 필요함.

외국의 입법례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

지만, 우리나라보다 고액으로 정해져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의 경우 120개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60개월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48개월”을 “120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8개월”을 “60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 지급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